등록번호	기획예산과-3142
등록일자	2015.3.13.
결재일자	2015.3.13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	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		부구청장	
이은임		김영혜	장형태	박진석	03/13 <b>김찬곤</b>
협					
조					

# 2015년 예산성과금 지급계획



기 획 재 정 국 기 획 예 산 과

## ₫ 2015년 예산성과금 지급계획

2014 회계연도 예산 중 제도개선이나 창의적인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 하였거나 세입을 증대시킨 직원 · 주민 대상으로 예산성과금을 지급코자 함.

1	추진근거				
	지방재정법 제48조(예산절약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 등)				
	지당세정법 제40호(에인필릭에 따는 정파님의 지급 등)				
	서울특별시 중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				
Ш	추진방향				
	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절감 및 세입확충으로 건전재정 운영				
	정부의 『예산효율화 추진계획』과 연계하여 예산효율화 우수사례 발굴				
	예산성과금 효율적 운영으로 직원 사기 진작 및 예산절감 계기 마련				
Ш	세부 추진계획				
	□ 지급요건				
[0	【예산 절감】				
_					

• 자발적 노력을 통하여 정원감축.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업무성과를 종전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예산을 적게 집행하여 예산이 절감된 경우

#### 【세입 증대】

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 개선 등으로 세입이 증대된 경우

□ 지급대상 : 예산절감 및 세입증대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 및 주민

□ 지급기준

○ 성과금 예산편성액 : 10,000천원

○ 성과금 지급규모 : 10,000천원 한도 내 지급

	예산 절감	지급 한도		
정원	감축에 의한 인건비 절감	감축인원의 총인건비 1년분 이내		
경상	적 경비 절감	예산 절감액의 50% 이내		
주요	사업비 절감	예산 절감액의 10% 이내		
	세입 증대	세입 증대액의 10% 이내		

- 성과금 지급규모는 자발적 노력 정도 및 예산절감 내용의 창의성 등을
 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예산편성 한도 내 결정
- 예산절감의 자발적 노력 및 내용의 창의성 등은 다소 미흡하나 성과가 명백한 경우 격려금 지급 가능
- 부서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발생한 예산절감 및 세입증대는 지급대상 에서 제외함 ※ 지급대상 여부(기준) 세부내용 별첨 참조
- □ 심사위원회 구성·운영
  - 자체 심사위원회(1차 심사) : 국·소단위로 구성하여 심의
    - 각 국 및 보건소별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
    - 위원장은 소관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소관국 소속 5급 또는 6급으로 구성

-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(최종 심사)
  -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
  - 위원장(부구청장), 위원(국·소장 5명, 구의원 1명, 외부위원 2명) ※ 외부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신규 위촉 예정(세부계획 별도 시행)

#### ○ 심의내용

- 예산성과금 지급심사 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
- 예산성과금(격려금) 지급대상 여부 및 지급규모 산정 등 심의

#### □ 지급 신청

- 예산성과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별첨 양식의 지급신청서를 국단위 주무 부서에 제출
- 주민 대상 예산성과금 신청 안내
  - 중구청 홈페이지에 예산성과금 신청 홍보 문안 게시 ☞ 구민참여 → 주민참여예산제 → 알림마당
- 예산절감 및 세입증대 증빙자료 제출
  - 예산절감이나 세입증대와 관련된 내용 및 집행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
  -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 내용과 집행실적 자료, 기타 증빙 자료 등

### □ 그간 예산성과금 지급현황

구분	2014년		2013년		2012년	
지급유형	성과금	격려금	성과금	격려금	성과금	격려금
지 급 액	5,500천원 (1건)	4,500천원 (4건)	7,000천원 (2건)	3,000천원 (3건)	3,775천원 (1건)	6,000천원 (4건)

☞ 2010년~2011년은 성과금 및 격려금 지급대상 없음

### Ⅳ 행정사항

- □ 예산성과금 신청(각 부서 → 국별 주무부서) : 2015. 3.24 한
  - 주민 신청시 해당 업무 소관부서로 이첩 → 부서 검토 후 국 상정여부 결정
    □ 【별첨1】 신청서 및 증빙서류 포함 제출
- □ 1차 자체위원회 심사 결과(의결서, 증빙서 포함) 제출(국주무부서→기획예산과): 2015. 3.31 한
- □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개최 및 결과 통보(기획예산과) : <u>2015. 4.24 한</u> □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개최계획 별도 수립, 시행
- □ 예산성과금 지급(기획예산과) : <u>2015</u>. 4.30 한

붙임: 1. 제출 서식 1부

2. 지급대상 기준 1부. 끝.